

● 사례1

피해자	만 2세/남
주학대 행위자 유형	어린이집 원장
학대 유형	신체학대
◆ 신고내용 :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이 학대 받았다고 신고됨 ◆ 현장조사 내용 • 신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이집에서의 체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적, 법적 조치를 원한다고 말함, 아동의 부모가 찍은 사진을 봤을 때 막대기로 맞은 것 같은 10~15cm 길이의 선명한 멍이 등에 1군데, 엉덩이에 약 2군데 희미한 멍이 있었다고 함. 이후 아동을 만나 실제로 확인하였을 때는 엉덩이 멍은 없었으며 등에 있던 멍도 희미해진 상태였음 •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집으로 찾아와 수차례 사과한 상태이며 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함 •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을 만나 상담 실시함,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적 차원에서 아동을 체벌했다며 약 30cm의 나무 막대기로 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함, 아동의 편식으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를 하다 보니 기저귀 위로 약 5대 때렸는데 아동이 피하면서 그 중 1대를 등에 맞아 멍이 들었다고 함 ◆ 조치결과 • 어린이집 :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• 학대행위자 : 자격취소 및 교육 • 피해아동 : 상담 및 어린이집 퇴원	

● 사례2

피해자	만 3세/남
주학대 행위자 유형	보육교사
학대 유형	신체학대
◆ 신고내용 :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이 낮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볼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함 ◆ 현장조사 내용 • 구청 보육지원업무 담당자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자인 보육교사들의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, 아동의 볼을 깨물어 멍이 든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도 인정하며 사죄를 구함 • 녹취자료와 해당교사의 인정으로 학대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됨 • 그러나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위험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경고 조치하고, 어린이집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함 ◆ 조치결과 • 어린이집 : 경고 및 모니터링(주기: 분기1회),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, 구청 CCTV설치를 의무화 지도감독 • 학대행위자 : 교육 및 재학대방지 서약서 작성 • 피해아동 : 어린이집 퇴원 및 타 어린이집 전원	

● 사례3

피해자	만 2세/여
주학대 행위자 유형	어린이집 원장
학대 유형	방임
◆ 신고내용 : 어린이집 첫 등원한 해에 아동의 머리가 4cm정도 찢겨져서 온 일이 있었고, 다음 해에도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몸에 멍자국이 발견되어 신고하게 됨 ◆ 현장조사 내용 • 신고자에 따르면, 아동의 어머니는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24시간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겼다고 함, 첫 등원 해에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던진 교구에 맞아 머리가 4cm정도 찢어져서 꿰맸던 일이 있었으며 당시 원장은 돈으로 보상하며 사과를 하였다고 함 •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원장의 태도가 정중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져 보호자는 그 이후로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함 • 그 이후 갑작스럽게 아동의 어머니가 급한 사정이 생겨 양일간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겼다가 데리고 온 후, 아동을 목욕시키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아동이 기겁을 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아동의 몸에서도 멍이 발견되었다고 함 이는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함 • 어린이집 원생 14명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신체학대로 의심되는 사항은 없었음 • 현장조사 결과, 어린이집은 2010년부터 법적으로 24시간 보육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아동을 주말보육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적절한 보육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보육됨으로써 아동이 방임된 것으로 판정함 ◆ 조치결과 • 어린이집 : 모니터링(주기 : 주1회) • 학대행위자 : 지속관찰 • 피해아동 : 상담, 타 어린이집 전원	

● 사례4

피해자	만 3세/여
주학대 행위자 유형	보육교사
학대 유형	정서학대
◆ 신고내용 : 1달가량 아동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“오늘따라 왜이래”, “우니까 네 목소리도 듣기 싫다”는 언어적 표현과 짜려보는 등의 정서학대를 받았다고 신고됨 ◆ 현장조사 내용 • 아동은 어린이집 교사가 “선생님 머리에 뽀난다”, “자꾸 울면 사랑반 안 좋아하는 줄 안다”라고 말했으며, 아동을 눈으로 짜려보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였다고 이야기함 •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, 신고자와 어린이집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으나 아동의 심리검사를 계획하고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기로 합의가 되었음 • 또한 신고자는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훈육방법을 알려주길 원하고 있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◆ 조치결과 • 어린이집 : 모니터링(주기 : 1달) • 피해아동 : 심리검사, 타 어린이집 전원	